

第45回 - 第8次

의안번호	제 74 호
의결년월일	1995. 12. 5

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5. 12. 5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11월 24일 논산군수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11월 25일
- 다. 상정일자 : 1995년 12월 5일 제45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지적과장 이정성)

가. 제안이유

-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 (법률 제4628호 93. 12. 27)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.

나. 주요골자

-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내 10일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.
- 독촉장을 받은 사람이 10일내 미납시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거 징수
-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 참작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의 예에 의함.
- 과태료 처분 불복시는 이의신청 가능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덧붙임 검토보고서와 같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- 없 음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의결

덧붙임 : 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(안) 검토보고서 1부. 마칩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74호

1995. 12. 2.

건 명	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정수조례(안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군 수	제출 년월일	1995. 11. 24.
소 관 위 원 회	총 무 위 원 회	회부 년월일	1995. 11. 25.

검 토 내 용

□ 조례제안 이유,

-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규정과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,
- 법률 제4628호 (93. 12. 27)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조례 제정근거가 상실되어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가 95. 9. 11일 폐지 공포되었음.
-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논산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음.

□ 본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,

-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내 10일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며,
- 독촉장을 받은 사람이 10일내 미납시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거 징수함.
-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 참작 별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의 예에 의함.
- 과태료 처분불복시는 이의신청 가능함.

□ 관련법 저촉여부에 관한 검토결과는,

-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(과태료)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위임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상위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음.

※ 1. 우리군의 부동산 중개업소 73개소

(가장많은 읍면 : 논산읍 39업소, 적은읍면 : 성동면 1업소)

2. 94 ~ 95 위반 및 처분조치

'94	행정처분 : 5건 (허가취소 2건, 업무정지 3건)
	과태료 처분 : 17건 2,100천원
'95	행정처분 : 11건 (업무정지 1~3개월)
	과태료 처분 : 2건 200천원